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농 · 축 산 · 임 · 어 업 용 기 자 재 및
석 유 류 에 대 한 부 가 가 치 세 영 세 율
및 면 세 적 용 등 에 관 한 특 례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·어업의 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·어민이 농업용 지게차와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19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
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
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“농업기계”를 각각
“농업용 기자재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농업기계”를 “농업용 기자재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”를 “세금계산서 및 다음 각
호”로, “서류”를 “구분에 따른 서류(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
한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: 국세청장이 고시하
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
2.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 경
우(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):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료
 - 가. 통·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
 - 나.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
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3.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(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. 통·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나.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”를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다음 각 호”로, “서류”를 “구분에 따른 서류(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. 통·이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나.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2.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. 통·이장,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조업확인서나.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내수육상양식업용”을 “내수면육상양

식업용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(제3조제3항관련)”을 “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(제3조제3항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표 제19호 중 “병충해방제기”를 “방제기”로 한다.

별표 5에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7. 농업용 지게차(최대들어올림용량 2톤 미만)

68. 콩나물 재배용기

69. 콩나물 두절기

별표 6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5. 어업용 고압세척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) ①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5조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”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”라 한다)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·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“농민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	제2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(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. 다만,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<u>농업기계</u> 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.	4.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농업용 기 자재</u> -----.

5. ~ 9. (생략)

10.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
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. 다만,
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
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
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3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·축산
· 임·어업용기자재의 범위) ①

· ② (생략)

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
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
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
다.

④ ~ ⑦ (생략)

제9조(환급신청 및 환급절차) ①
(생략)

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
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
(이하 “환급대행자”라 한다)를
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
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
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
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
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
경제부령이 정하는 농·임·어

5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
-----.

----- 농업용 기
자재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·축산
· 임·어업용기자재의 범위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 농업용 기자재---
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환급신청 및 환급절차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
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
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
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세금계산서

2.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
어민등확인서(매년 최초로 환
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
다)

가.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
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
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
하는 농어민등확인서

나. 개인인 경우에는 통·이
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
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
(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
경우에는 제외한다)

<신 설>

----- 세금계산서 및 다음 각
호-----구분에
따른 서류(매년 최초로 환급을
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---.

1.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
인에 해당하는 경우: 국세청장
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
하는 농어민등확인서

2.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조
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에 해
당하는 경우(환급대행자의 조
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):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자료

가. 통·이장의 확인을 받은
농어민등확인서

나.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
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
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
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
등록확인서

3.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
인에 해당하는 경우(환급대행

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 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·임·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-----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54조에 따
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
및 다음 각 호--- 구분에 따른
서류(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
하는 경우에 한한다)---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2. 통·이장, 어촌계장 또는 업 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 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(개인인 사업자로 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한다) ⑤ ~ ⑦ (생 략) 제15조(농업·임업·어업용 면세 석유류의 범위) ① (생 략)	1.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에 해 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. 통·이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나.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.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 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. 통·이장,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의 확인을 받은 조업확인 서 나.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 영체 등록확인서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5조(농업·임업·어업용 면세 석유류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
---	---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·양식업용 선박 및 <u>내수육</u> <u>상양식업용</u>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·2. (생 략)	음) ② ----- ----- <u>내수면</u> <u>육상양식업용</u>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26